

유해 폐기기를 보관 또는 처분하는 사업자 여러분께

2018년 4월부터

도도부현 지사 등 ^{※1}에게 신고 ^{※2}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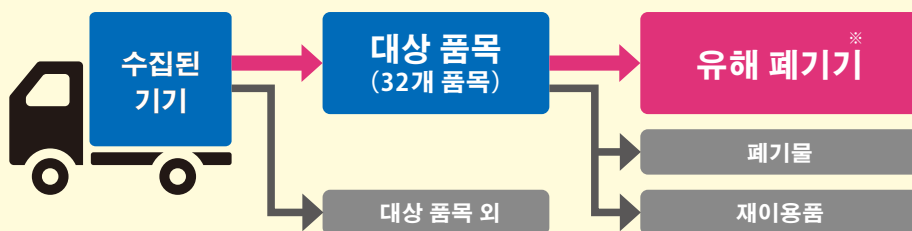
2018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유해 폐기기를 보관 또는 처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폐기물처리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정령시장 ※2: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유해 폐기기의 판별

유해 폐기기는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기기 중, 폐기물이 아니면서 동시에 재이용(재사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용이 종료돼 수집된 기기(폐기물 제외) 중, 그 일부가 원재료로서 상당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적정하지 않게 보관 또는 처분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신고에 대해

신규로 유해 폐기기의 보관 또는 처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자

해 당 야 드 와 관 련 된 폐기물처리법의 허가가 있는 자 등, 생활환경보전상 적절하게 취급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해 폐기기의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대상 품목※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재활용법)에 지정된 4개 품목과 소형 폐전자기기 등의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소형가전재활용법)에 지정된 28개 품목이 대상 품목입니다. (부속품 포함)

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4개 품목)



소형가전재활용법 대상 품목 (28개 품목)



팩시밀리, PHS, 스마트폰,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DVD 리코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스테레오 세트, PC, 자기 디스크 장치, 광 디스크 장치, 디스플레이, 전자서적 단말기, 전동 재봉틀, 전기 그라인더·드릴, 체중계, 전동식 흡입기, 필름 카메라, 전자레인지, 전기 제습기, 전기 다리미, 전기 청소기, 전기 고타쓰, 전기 스토브, 전기 면도기, 전기 마사지기, 러닝머신, 전기 잔디깎기, 형광등기구, 전자시계, 전자악기 등

※가정용 기기와의 차이에 대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 업무용 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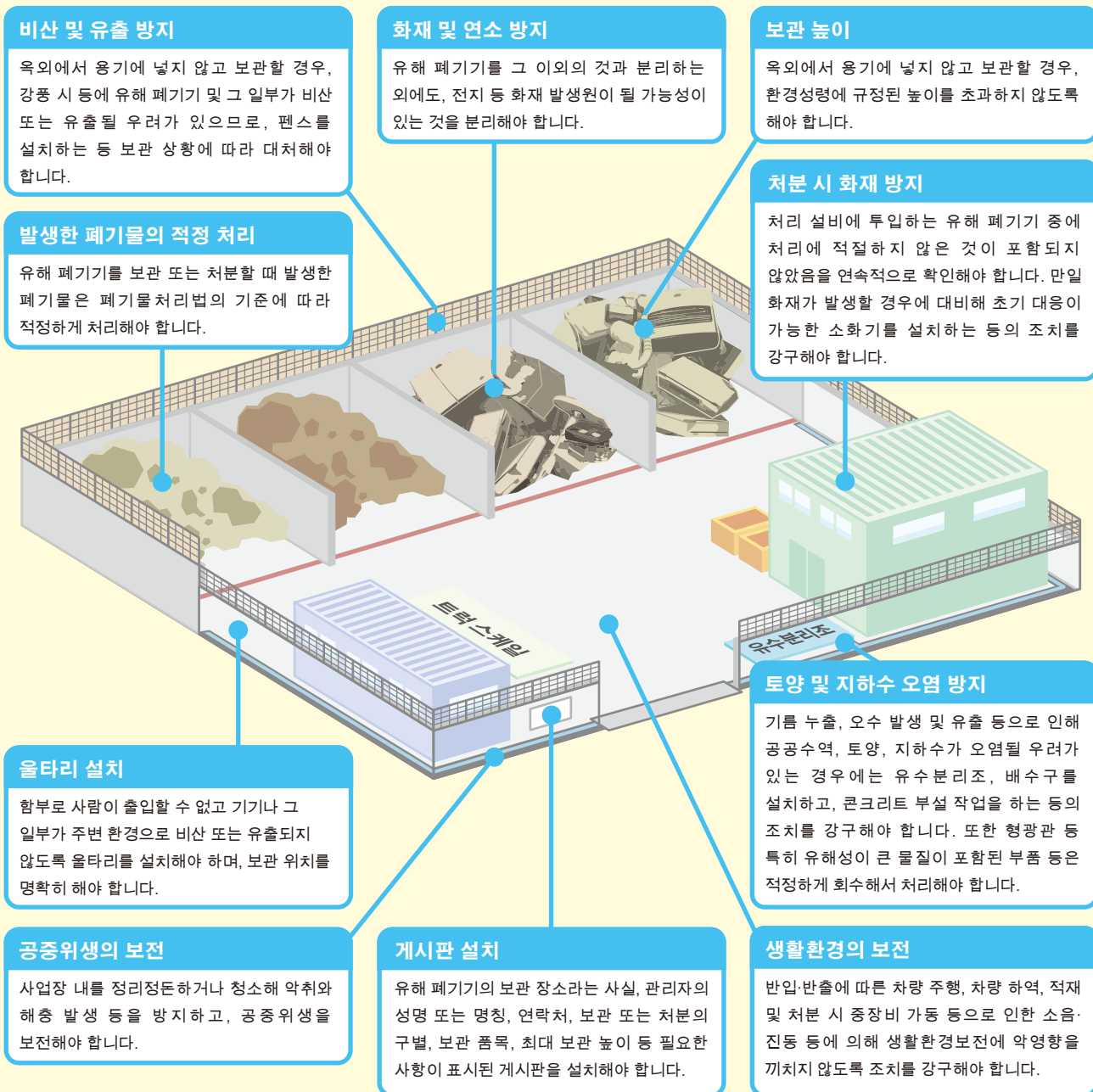
폐기물처리법 개정의 배경

납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폐전기전자기기와 금속 스크랩 등이 혼합된 것(소위 “잡품 스크랩”) 등이 환경보전조치가 충분히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또는 처분됨으로써 화재를 포함한 생활환경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해 폐기기의 보관 및 처분 기준

유해 폐기기 보관 등의 사업자는 기준을 준수해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분함으로써 생활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에 기준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현장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어가 사용되므로, 일본어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해 폐기기의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는 가까운 도도부현·정령시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전단지에 관한 문의처]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 폐기물규제과 전화: 03-3581-3351

자세한 내용은 유해 폐기기의 보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env.go.jp/recycle/waste/laws/kaisei2017/index.html>)